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
----------	-----

제출년월일 : 1999.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개정

2. 주요골자

- 과태료부과액수 상향조정 (부과대상제1호 및 제2호)
- 과태료부과대상중 제3호 및 제4호 삭제
 - 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그종사자 또는 그시설을 이용하는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
 - 제4호 :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신설(제3호~제10호)

3. 관계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1999.2.8일 개정)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 제1항중 “법제9조 제2항,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를 “법제 9조 제2항 및 제 9조 제4항을 위반한자와 법제 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 로한다.

[별표1] 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천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법제9조 제2항)	300	600	1,000
2.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법제9조 제4항)	300	600	1,000
3.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행위의 변경 또는 금지와 관련된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28조 제1항)	200	500	1,000
4. 담배갑 포장지 앞·뒤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 표기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 (법제28조 제1항)	200	500	1,000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표기와 관련된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자.(법제28조 제1항)	200	500	1,000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제조 담배에 관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행위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28조 제1항)	200	500	1,000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한 자가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시,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법제28조 제1항)	200	500	1,000
8.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 공중 이용 시설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자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제28조 제1항)	200	500	1,000
9.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과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제28조 제1항)	200	500	1,000
10. 보험자의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 부담금과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법제28조 제1항)	200	500	1,0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별표 1〕 과태료 부과 기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부 과 대 상	부과금액(천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2 (생략)	100	300	500	1~2 (현행과 같음)	300	600	1.000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그종사자 또는 그시설을 이용하는 자 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 시 하지 아니한 자 (법제 12조 제2항)	100	300	500	3. (삭제)			
4.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법제 9조 제3항)	100	200	300	4. (삭제)			
3~10(신설)				3.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 행위의 변경 또는 금지와 관련된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 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 피한 자. (법제 28조 제1항)	200	500	1.000

현행			개정안			
			8. <u>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해야 하는 공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u> (법제 28조 제1항)	200	500	1,000
			9. <u>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조담배에 대한 부담금과 관련된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u> (법제 28조 제1항)	200	500	1,000
			10. <u>보험자의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 부담금과 관련된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u> (법제 28조 제1항)	200	500	1,000
제4조(청문)①법제9조 제2항, 제9조 제3항, 제9조 제4항,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4조(청문)①법제9조 제2항 및 제9조 제4항을 위반한 자와 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②~③(생략)			②~③(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 발췌서

□. 국민건강 증진법

제 7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 8조 ③ 담배 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 9조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②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삭제

④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 12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 23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부과, 징수한다.

1.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제조 담배에 대한 부담금
2.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자의 예방보건을 위한 사업비(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중 100분의 10이내의 부담금

제 28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7조 제1항, 제 8조 제3항 및 제4항, 제 9조 제1항내지 제4항 또는 제 2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34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다.
2. 제 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삭제

제 35조 ①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 라한다)이 부과, 징수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